

산업보건 주요뉴스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노동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작성 배포

노동부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산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준수토록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 폭염특보제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일 때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 발령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 시 사업장은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

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는 폭염대비 행동요령 외에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사업장(주물업·유리공업)과 옥외사업장(건설·항만하역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사업장 지도·감독 시 전기시설,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위험시설과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산소농도·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등을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

작업장 유해물질 허용기준 준수제도 도입

- '09년부터 시행,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9년부터 발암성물질이나 직업병 발생물질 등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구체적인 유해물질과 허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기준 대상물질은 노말렉산,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 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 작업이며, 단시간은 1일 1시간 미만 작업을 말한다.

금번 허용기준제도의 도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중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지난 '05년 1월 노말렉산 중독으로 외국인 근로자 8명이 하반신 마비되었으며, '05~'06년에는 TCE 중독으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바 있다. 또, '06~'07년에는 DMF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현행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기준은 권고기준으로서 이를 초과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장이 시설·설비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보다는 보호구 지급에 의존하고 있어, 직업병 다발 물질 등 특히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었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3~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인적요건 강화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가 없이 석면 철거한 32곳 사법처리

- 노동부, 석면 불법 철거현장 단속 강화 -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한 32개 공사현장이 사법처리 되는 등 석면 불법 철거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